

창원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20가합5227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

담당변호사 김막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0. 11. 1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1212㎡에 관하여 1985. 4. 28. 점유취득시효 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

재판장 판사 장우영판사 전보경판사 이학근

별지